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1 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:이탄희·고영인·김상희

김성주 · 김용민 · 박광온

박용진 • 박주민 • 오영환

우원식 • 이용빈 • 이정문

이재정 · 최인호 · 최혜영

홍익표 • 유미향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,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,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, 검찰 수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· 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

대한 「형법」 제123조(직권남용) 및 제268조(업무상과실·중과실 치사상)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·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 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「형법」 제123조 및 같은 법 제268 조의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10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 에 대한 「형법」 제123조 및 같은 법 제268조의 죄로 아직 공소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2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
	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・16세월
	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
	대한 「형법」 제123조 및 같
	은 법 제268조의 죄의 공소시
	효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
	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
	<u>으로 한다.</u>